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 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 황정아 · 박범계 · 조승래

장철민 • 박정현 • 장종태

박용갑 • 차지호 • 박지혜

백승아 · 김남근 · 윤종군

박균택 • 김기표 • 김용만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&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,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.

이에 따라 국가 R&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.1%, 2021 년 4.9%, 2023년 4.9%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.

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.6조 원의 R&D 예산을 삭감하며,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나오고 있고, R&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

정부 예산편성액의 5%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, 안 정적인 국가 R&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 신 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2의 개 정규정은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2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 예
	산의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은
	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
	할 때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
	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
	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액
	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이
	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